

변경대비표

1. 대상약관

-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

2.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4. 변경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제 10 조(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) ①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(구.하나은행: 펀드>> 펀드자료실>> 공지사항>>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, 구.외환은행: 펀드>펀드가이드>펀드공지사항>공지사항 및 제도변화> 펀드매입신청자금 이용료 지급기준 안내문 공지)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<생략></p>	<p>제 10 조(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) ①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(펀드>> 펀드자료실>> 공지사항>>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)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<생략><기존과 동일></p>	<p>전산통합으로 인한 홈페이지 통합</p>
<p>제 15 조(약관의 변경 등) ① <생략></p>	<p>제 15 조(약관의 변경 등) ① <생략></p>	<p>금융투자협회 요청(공정거래위원회)</p>

<p>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저촉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촉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 일 전(제 1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전)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다만, 기존 저촉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촉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③~ ⑤ <생략></p>	<p>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저촉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촉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 일 전(삭제)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저촉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촉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③~ ⑤ <생략></p>	<p>시정요청)</p>
<p>(신설)</p>	<p><부칙> 이 약관은 2016년 6월 7일 부터 시행한다.</p>	